

의안번호	제 97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
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#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임영은, 이옥규,  
박상돈, 심기보, 육미선,  
김국기, 원갑희

## 1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명칭 변경
  -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→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안 제2조)
  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안 제10조, 제11조제2항)
  -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안 제12조제3항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 - 아니한 → 았은(안 제13조제3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,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사중단 건축물”이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「<u>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사중단 건축물”이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「<u>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은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은 「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.</p>
<p>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	<p>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
<p>제12조(기금회계공무원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</p>	<p>제12조(기금회계공무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아니한</u>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「<u>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<u>않은</u>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「<u>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제4조(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1.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
2.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
3.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·간접적 원인
4.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19.>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, 건축관계자,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건축물·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

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·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19.>

제6조(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1. 정비사업의 기본방향
2. 정비사업의 기간
3.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
4.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

5.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
6.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
- 6의2.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
7.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
8.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,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,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과의 협의를 거치며,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)** ① 시·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,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.

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